

인권정보자료실
SAf1.27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

1998년 4월 2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보자료실
SAf1.27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

1998년 4월 2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법학회 10주년 기념행사

10주년 기념행사
한국법학회 10주년 기념행사

한국법학회 10주년 기념행사

한국법학회 10주년 기념행사
한국법학회 10주년 기념행사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자 : 이장희(한국외대법과교수,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발제자 : 장주영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자 : 강경선(방송대법과교수), 권오현(민가협공동의장)

김 당(시사저널차장), 유종성(경실련사무총장),

천정배의원(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이승우(경원대법대교수), 이원섭(한겨레신문논설위원)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글싣는 순서

1. 발제문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4

2. 토론요지문

새정부의 안기부 개혁방향과 안기부의 역할

천정배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 13

이승우교수 (경원대 법학과) ······ 17

이원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20

국가안전기획부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현(민기협 공동의장) ······ 22

안기부 개혁방향과 관련한 김형찬씨의 사례

홍근수(향린교회담임목사, 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 24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

장주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안기부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

실로 50여년 만에 민주적으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국민정부가 출범된 지금 과거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정권유지의 첨병으로 일해왔던 국가안전기획부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안기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른바 ‘북풍공작’을 통해 교묘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야당후보낙선공작을 펼쳐 탈법적인 정치공작기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선거때만 되면 안기부에 의한 간첩사건이 터졌고 안기부가 공작적 차원에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는데 의혹수준에 머물렀을 뿐 안기부의 정치공작을 밝혀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풍공작이 드러난 것은 결국 새정부가 과거 정권과 달리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집권저지음모를 뚫고 정권획득에 성공한 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의 북풍사건은 그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여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하여 정치공작을 일삼았던 세력들을 청산하고 안기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순수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김영삼정권의 안기부개혁 실패

안기부의 권한에 부분적으로나마 실질적인 통제를 가한 것은 김영삼정부가 처음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안기부는 과거 정치공작의 오명을 벗고 거듭나야 한다. 정치공작등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권초기 개혁조치의 하나로 안기부법을 개정하였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의 예산과 업무를 통제하며 안

기부원들의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개혁작업도 사사건건 안기부의 반발에 부딪쳐야 했다. 수사권존속문제는 당시 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했으나 안기부의 강력한 반발과 여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수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듯 안기부의 반발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개혁에 그친 것은 음으로 양으로 안기부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당시 집권당의 한계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개정후 안기부는 꾸준히 기회를 엿보다가 정권말기에 정권이 취약한 틈을 이용하여 정권재창출에 집착한 신한국당의 도움으로 날치기입법을 통해 불과 3년만에 제한된 수사권을 회복하는 집념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지금까지 날치기 안기부법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수사권회복이라는 날개를 단 안기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오익제편지사건, 윤홍준 기자회견사건등 북풍사건을 일으켰다.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안기부의 예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안기부가 업무를 자세히 보고하지도 않아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안기부는 국회의원마저도 기밀누설의 의혹을 두며 견제를 가하여 정보위 활동을 위축시켰다. 한마디로 정치공작을 용납치 않겠다는 김영삼정권의 안기부개혁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최근의 북풍공작이 이를 여실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정부의 실패는 안기부개혁은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수사권폐지가 아닌 일부 수사권제한만으로는 결코 안기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날치기입법파동이 증명해주고 있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안기부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력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안기부개혁은 정권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정권이 안기부의 강력한 반발을 억누르고 일부나마 안기부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의 개혁분위기 때문이었다. 집권직후 안기부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안기부의 조직이기주의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거꾸로 안기부에 의존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안기부의 개혁방안

가. 수사권폐지

(1) 안기부는 현재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3호) 김영삼정부 초기의 안기부개혁작업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중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가장 남용되었던 제7조(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제작·반포·소지 등 죄),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였으나 1996.말 날치기로 안기부법을 처리함으로써 위 두가지 죄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와 정치개입행위를 저질러왔기 때문에 안기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안기부를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안기부의 수사과정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의 사례

안기부가 그 동안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저질러온 고문등 인권침해와 사건조작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영장 없는 체포와 압수수색, 변호인 접견거부등은 다반사로 있어왔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89년 문익환 목사와 함께 방북한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유원호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죽어도 안기부에는 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겠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안기부가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던 사례는 방북사건으로 조사 받은 1989년 서경원의원,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조사되었던 홍성담씨, 1991년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박노해씨의 예가 있다.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후인 1993년에도 안기부는 프락치를 이용해 김삼석, 김은주 남매간첩사건을 조작하였다. 김삼석씨는 안기부의 계속되는 구타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1994년에는 영장 없이 현직 대학교수인 정현백, 김홍진 교수를 연행하였으나 나중에 아무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1995년에는 안기부는 한국외국어대 박창희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으나 안기부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고 조작된 사건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1995년 김동식간첩사건

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박충렬씨는 변호인의 접견과 의사의 진료도 거부당한 상태에서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받았다. 1996년 12월에는 다른 사람의 영장에 의해 잘못 연행된 김형찬씨는 안기부요원들의 고문에 못 이겨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다. 위 사례들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은 차치하고라도 안기부개혁이 시도되었던 김영삼정부 시절에도 안기부의 수사태도나 인권침해행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는 김낙중 간첩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터트려 색깔론을 부추김으로써 당시 제일야당후보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지난 대선에서도 황장엽파일 수사라든지 오의제편지사건 수사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3)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 동안 안기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사건 조작과 정치개입, 인권유린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졌던 국가보안법의 남용도 억제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으로 구성원, 조직, 활동내용 등 모든 것이 비밀이므로 결코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필요로 하는 수사권을 정보기관이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1993년 말 안기부법개정에 의해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안기부는 여전히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였고 영장 없이 불법체포, 구금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안기부직원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4) 정보기관이 정보와 수사기능을 가질 경우 그 권한이 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계슈타포나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 이란 팔레비왕조의 사바크, 동독의 슈타지 등의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사하면 되므로 대공수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독

일의 경우 2차대전후 서방연합국에 의해 정보기능과 보안수사기능이 분리되었으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조에 의해 국가안보를 지켜오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만약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안기부를 국내정보기관과 국외정보기관으로만 분리하고 국내정보기관이 보안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지금까지 안기부가 저질러온 인권침해는 변함없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저질러진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국내정보수집과 보안수사권행사라는 두 가지 권한을 축으로 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국외정보기능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안기부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중앙정보부를 만들 때는 수사권을 혁명기간(5·16 쿠데타이후 군정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두려고 하였으나 그 뒤 손질을 못하고 그만 두게 됐다. 안기부의 수사권은 언젠가 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안기부의 개혁에 있어서 수사권폐지는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수사권제한과 같은 타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5) 또한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역시 안기부가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5년 2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안기부가 전국의 지부장들에게 ‘지자체선거 연기검토’ 지시를 내린 사건은 명백히 정치에 관여한 행위였는데도 안기부장과 차장이 옷을 벗었을 뿐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데 안기부 스스로 일부 부원들만 형사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안기부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색출하여 수사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지금 까지 그런 예도 없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안기부원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권리다툼이나 안기부의 수사방해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기부원들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안기부가 가지고 있는 안기부원들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내정보기능과 국외정보기능의 분리

현재 안기부는 국내보안정보와 국외정보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외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전쟁 속에서 해외 경제정보, 기술정보의 수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반도주변국들의 패권주의와 정세변화에 대한 정보수집도 긴요한 일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체제와 경제, 대남 정책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국내정보수집에만 열을 올린 안기부는 해외정보수집과 북한정보수집에는 소홀했다. 미국 CIA출신인 제임스릴리 주한미대사는 '한국 정보기관은 우수한 사람들이 국내파트로 몰리기 때문에 대북 정보에 취약한 편이다.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안기부의 국내와 해외파트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도 국내정보업무는 FBI, 해외정보업무는 CIA가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도 국내정보는 내무성산하의 MI5가, 해외정보는 외무성산하의 MI6이 맡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국내방첩보안은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찰국(DST)이, 해외정보기능은 국방부산하의 대외보안총국(DGSE)이 맡고 있다. 이스라엘도 모사드(해외)와 신베스(국내)로 분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안기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국내담당 조직축소나 인원축소라는 미봉책으로 접근할 경우 언제든지 집권세력의 필요성과 안기부자체의 팽창논리, 정치권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시 국내정보업무의 영역을 확장할 우려가 있다.

다.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 폐지

안기부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기밀보호와 신원조사, 보안조사 등을 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그러나 나아가 행정기관에 대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조정권한(법 제3조 제1항 5호)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조정업무를 보면 통일원에 대해서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5조 제1호) 이는 모두 통일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정권한을 통해 안기부는 통일원의 통일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의 경우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정 제5조 제5의2호) 정보기관이 문화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업무를 구실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어 각종 정부정책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놓은 안기부의 조정권한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3년말 법개정으로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폐지하였음에도 안기부는 위 규정 제11조에 정보사업·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조항을 그대로 두어 보안감사를 사실상 계속할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도 문제이다.

라. 국회의 통제강화

김영삼정권은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안기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기부의 예산은 항상 무수정 통과되었다. 국회의원들만에 의한 단기간의 비공개 심사로는 실효적인 예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거친 의원보좌관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안기부의 예결산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안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 결산심사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를 통한 안기부의 통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안기부가 정보위원회에 제공한 정보가운데 국가안보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는 정보위원들의 의결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안기부가 홍보를 원하는 내용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기밀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유민주사회에서 국가기밀의 지나친 확대와 비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 정보감독(혹은 자문)위원회의 설치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사전 혹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보감독위원회(Intelligence Oversight Board)와 대통령 외국정보자문위원회(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감찰관(Inspector-General), 영국의 Security Service Commissioner와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나 판단이 옳은 것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으로써 정보기관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국가 정책을 오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의 특정 세력이나 외국정보기관과 결탁하여 민주적 정치과정을 위협하는 일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바. 관련법규의 정비

(1)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3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안기부직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기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안기부가 안기부원에 대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사실상 안기부원에 대한 수사를 제약할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안업무규정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 있다. 안기부의 국내정보업무와 관련하여 위 규정들은 불필요한 혹은 불명확한 규정들을 통해 안기부의 권한을 치기 확대해 놓고 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은 독재정권하인 1970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특히 신원조사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안기부가 신원조사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신원조사의 대상과 내용 등도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1993 연말의 법개정으로 없어진 보안감사에 관련된 규정이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보안업무규정에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기관의 월권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권한의 축소와 제한,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집권초기에 시행되어야 할 안기부개혁

안기부에 대한 개혁작업은 김대중 정부의 집권초기에 '국내정치개입을 단호히 막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또 근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정부형태가 개편될 경우 상당기간 정치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고 이때 정보기관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이나 재벌 기타 권력집단으로부터 직권남용의 유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개편전에 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정치발전에도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53%가 안기부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집중된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정보기관의 업무특성상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되 권한을 분리하고 적절한 통제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안기부를 과거 잘못된 정보기관으로부터 환골탈태시켜 '국민의 정부'에 어울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길이 될 것이며 정보기관 스스로의 올바른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토론요지문

새정부의 안기부 개혁방향과 안기부의 역할

천정배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1. 머리말

발제자께서도 강조하였듯이 안기부 정치공작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해왔던 세력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이다. 발제에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안기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므로 나는 주로 안기부 자체의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하겠다.

안기부는 대통령소속에 설치되어 있고,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으므로 대통령이 안기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안기부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관련 김대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이 권력유지 또는 권력창출이 천병으로 사용하여 왔던 이른바 '안기부프리미엄'을 내놓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안기부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 및 보안등 본연 업무에 전념도록 하고 국내 정치문제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기부를 정권안보기관이 아닌 국가안보 기관으로 기득권세력의 이익옹호집단이 아닌 국민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안기부 개혁의지가 확고하기에 새정부는 '국민이 힘만 실어주면' 반드시 안기부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 새정부하 안기부의 개혁방향

안기부가 과거의 오명을 벗고 21세기가 요구하는 '국민의 안기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북풍공작 관련자와 정치 색이 짙은 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있어야 한다. 인적청산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가 있어야 한다.

먼저 기능 면에서는 해외정보분야의 위상강화와 국내정보분야의 축소, 산업, 경

제정보 수집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해외정보수집과 북한정보수집 부문 강화를 위해 최근 안기부는 과거 1차장 산하의 국내정보분야를 2차장 산하로 하고 2차장 산하의 해외정보분야를 1차장 산하로 격상시키는 한편 산업,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관한 정보수집 부서를 증설하고 기존 국내 근무요원들을 대폭 재화 등의 영역에 관한 정보수집 부서를 증설하고 기존 국내 근무요원들을 대폭 재배치하였다. 발제자께서는 차제에 국내정보업무와 해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안기부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내담당 조직의 축소라는 미봉책에 그칠 경우 언제든지 집권세력의 필요성 등에 의해 다시 국내정보업무의 영역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청할만한 지적이다. 그렇지만 국내정보업무를 담당할 부처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각종 국가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수집 기능의 조정과 통합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당장 해외정보업무와 국내정보업무 담당 기관을 별개로 두기는 어렵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기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국민의 성숙된 민주역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국내정보업무 영역의 확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 여겨진다.

조직 면에서는 국내 정치공작 담당 부서를 없애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전산화를 위한 관련 부서를 증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기 부상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기밀이 아닌 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인사면에서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북풍사건 관련인사, 국내정치 관여인사, 김현철 인맥 등을 정리하여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과 인사불만으로 인한 직원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안기부가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각 분야의 전문기능 확충이 우선 시급하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가능성은 감지해 조기 경보하는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외부전문가들의 영입은 조직에 활력을 주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환경 등 안기부의 취약부문에 외부전문가를 일정기간 초빙해 정보를 판단하는데서

광범위한 도움을 얻어야 한다.

안기부는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발제자께서도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과거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변호인접견불허, 피의사실공표, 사행활침해 등 갖가지 인권침해와 정치개입 행위를 저질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안기부는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를 이유로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훈련 과정에는 관련법률 및 규정은 물론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인권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안기부에서 간첩 혐의자 등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겼거나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엄정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21세기를 대비하는 안기부의 역할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둔 오늘 날 세계는 무한대의 경제전쟁, 정보전쟁의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안기부는 국가최고 정보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인 통상전쟁과 정보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안기부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유통구조를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기부는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곳에 배포하는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3.26 안기부경기지부가 경기도내 각급 기관 및 첨단 반도체 연구소 보안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해킹보안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는 안기부의 대민 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 것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과도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안기부는 또 정부기관 내에서 정보수집과 분석이라는 특화된 영역만 담당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한 정책기획, 정책결정, 집행 등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즉 정책수립과 집행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 맡아야 하며 비공개로 활동하는 정보기관이 맡아서는 안된다.

또한 새정부하에서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의 방북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기부는 교류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국민들이 북한의 공작에 포섭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류협력에 임하는 국민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정확히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맷음말

안기부는 본연의 임무 외에는 어떠한 정치공작에도 관여하거나 말려들지 않는 철저한 직업주의로 무장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요원은 정보요원으로서 일할 때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음지에서 비밀을 지키는 각오가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 다시는 국가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 외에 ‘양지’를 지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안기부의 개혁은 결코 단시간 내에 이를 수 없으며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회, 시민, 사회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새정부의 안기부 개혁작업을 감시, 독려해 나가자.

토론요지문

이승우교수(경원대 법학과)

1. 안기부개혁의 방향설정의 중요성

국가안전기획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안기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음지에서 일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안기부는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음지에서 암약해왔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정권변화가 없었던 관계로 안기부는 경상도출신으로 대표되는 구여권의 정치세력을 옹위하면서 사실상 그들과 더불어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안기부는 구여권과 엉켜있는 인맥과 이해관계 때문에 구여당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가안보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구여권의 재집권을 위해 상상을 초월한 매국적 활동(북풍조작 등)을 하여왔다.

이제 안기부는 확실하게 거듭나야 한다. 특정한 정권을 위한 안보기관으로부터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권은 변하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의식은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기부는 정권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임받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변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기부개혁의 방향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기부의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안기부가 정보기관인 까닭에 속성상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안기부가 획득한 결과물인 정보는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개방하고 국민모두가 그것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특정한 정파나 정치세력에게만 이용되어 온 때문에 안기부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안기부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안기부가 획득한 모든 정보를 국민전체가 공감하는 진정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될 정보가 아닌 한-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안기부가

획득한 정보를 국민모두가 공유하는 체제로 나가면 안기부의 권력남용도 사라질 것
이고 또한 국민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2. 발제자에 대한 토론

(1) 안기부의 수사권 문제

1993년 말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재안을 만들 당시에 수사권폐지여부가 핵심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인은 수사권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수사권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놓았고 (특히 남용이 많았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의 축소), 그것이 여야간에 합의되어 개정되었었다.

본인은 헌법상의 人身에 대한 基本權(소위 身體의 自由)의 대부분이 人身에 관한 逮捕-拘束-搜查의 適法節次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은 구성원, 조직, 활동내용 등 모근 것이 비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신에 관한 기본권보장의 정신과 안기부의 비밀성 내지 은밀성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 없이 안기부의 수사권의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있는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는 안기부는 대표적 법집행권에 해당하는 수사권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능상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성질상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해야 하며 또한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하나인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국가의 결산 및 회계감사만 할 뿐 국민을 상대로 법집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태여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있는 행정각부로 편입되든가, 아니면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남든지 해야만 안기부 조직의 위헌성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국내정보기능과 국외정보기능의 분리

당연한 주장이고 옳다. 정보기능도 전문화가 요구된다.

(3)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 폐지

발제자의 주장에 찬동하기 어렵다. 안기부가 담당하는 각종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보안업무는 행정각 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를 기획·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안기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여러 정보내용을 정리하고 마련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결국 안기부는 과거와 같이 행정각부를 상대로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보의 조정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4) 국회의 통제강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서론에서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정보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정보감독(혹은 자문)위원회의 설치

옥상 옥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6) 안기부직원에 대한 수사권

안기부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당연히 직원수사권도 폐지되어야 한다. 안기부는 자체에 있는 감찰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타기관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결론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나 안기부구성원의 의식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이번 북풍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채서씨의 행동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나?

토론요지문

이원섭 (한겨레신문논설위원)

안기부는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음지의 권력기관에서 탈피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안기부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 김영삼 정권초기에 안기부개혁을 다짐했으면서도 결국 실패한 것은 핵심 움자리 몇몇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조직개편으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안기부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김대중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안기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관, 국민에 철저히 복속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기부 조직원들은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할 것이다. 다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대통령개인에 대한 충성과 혼동하는 것이 문제다. 권력에 종속되다 보니 국민을 정치조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권력남용과 인권유린의 시비가 일어난다. 권력에 중독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직의 원칙인 상명하복이 잘못 행사되면 조직전체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지휘부의 몇몇이 정치적 이유로, 개인적 욕심으로, 또는 비뚤어진 신념으로 조직을 잘못 이끌면 이를 견제하거나 비판할 틈도 없다. 바로 비밀조직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번 북풍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안기부라는 조직을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조직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기부폐기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안기부가 안고있는 숱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개혁수준을 넘어서는 변혁이 정권초기에 분명히 행해져야 한다. 조직개편수준이 아니라 근본철학이 뀌어야한다. 현재 안기부는 정보수집기능과 함께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데 수사기능을 과감히 떼어내야 한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입등 불법적인 권력남용을 하게된다. 수사는 검찰, 경찰등 공개조직에서 맡아야 인권유린소지를 줄일 수 있다.

수사권폐지는 음지의 권력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취약한 정보수집기능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안기부는 제일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정보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주석 사망 때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방송들이 정식발표2시간 전에 특별방송을 예고했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실수를 범했었다. 대북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직내부에서 힘들고 어려운 해외 대북정보파트를 기피하고 국내정보 파트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예산이나 승진 등도 국내정보쪽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래서는 구조적으로 해외부문, 대북정보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종찬 신임안기부장은 야당시절‘지금 안기부는 정보수사기관이다. 정보수집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해야 정보기관이 살아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있다. 새정권은 안기부에 의해 피해를 입던 야당시절을 생각해야 한다. 누구라도 막상 정권을 잡으면 안기부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초기에는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스스로 조직논리에 빠져서 조직을 옹호하게 되고, 나중에는 통제력을 상실해 오히려 되잡히는 우를 범하기 쉽다. 지난 정권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면서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경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권력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강제로라도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기부를 살리는 길이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이다.

대북정책과 수립과 관련해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 동안 안기부가 대북정보를 독점하고 통일원등을 겹데기로 만들었었다. 여간해서는 다른 기관에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안기부는 어디까지나 정보수집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비밀 공작기관인 안기부가 대북정책수립에 관여해서는 남북관계가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색국면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대북정책수립은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서 장기비전을 갖고 해나가야 남북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요지문

국가안전기획부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 국가안전기획부(옛 중앙정보부 포함)는 정치개입,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로 이 기구가 생겨 나서부터 국민지탄의 대상이었고 아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져 왔다.

* 1998년 반민주악법 개폐논란이 있을 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삭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었고 1993년엔 7조(찬양, 고무죄) 10조(불고지죄) 수사권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불법구금, 강압수사, 변호인 접견거부 등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은 여전했다. 이른바 문민정권의 최대개혁이라던 안기부 수사권 삭제를 3년만에 같은 정권에서 날치기로 되돌린 것은 안기부 수사대상을 대공관계 뿐 아니라 학생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 언론, 교육, 문예운동, 정치권에까지 확대하여 공안정국을 조성, 정권재창출을 꾀하려는 속셈이었다.

* 이른바 '북풍공작'은 이제까지의 정치개입 수준을 넘어 민족분단이란 비극적 상황을 악용, 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장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풍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하며 선거 때마다 있었던 사건(예로써 92년대선 전에 터진 이른바 남한조성노동당 사건)들과 김성만씨 등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박충렬 씨 간첩 조작사건, 김형찬 불법 조작사건 등 인권유린(가장 최근만 해도 민자통 상임의장 나창순 씨에 대한 물고문, 구타, 잠안재우기, 욕설 등 만행)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문사례는 별도)

* 국가안전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국가안전을 내세워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인권을 유린하고 7.4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 남북간에 틈을 벌여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 이러한 이유로 안기부는 원칙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체계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1. 안기부의 수사권은 모두 없애야 하고 해외정보 기구로만 남아야 한다.
2. 안기부의 예산과 집행은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의 엄밀한 심의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3. 이제까지 안기부 직원에 의한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안기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 옮겨 인권침해, 직권남용을 없애야 한다.

토론요지문

안기부 개혁 방향과 관련한 김형찬씨의 사례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김형찬 사건은 안기부의 수사권 전면 폐지가 한국의 현실에서 왜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시사해 주는 사례이다. 김형찬 사건은 96년 12월 5일 사건 발생 당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까지 진행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도 법적인 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김형찬군은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되었다. 그것도 영장이 발부된 이재규라는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인되어 연행된 것이다. 안기부 직원들은 신원조회 결과 엉뚱한 사람을 오인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고자 김형찬군을 풀어주지 않고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변호사 접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형찬군은 자신의 불법연행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의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을 기도하였고, 하반신 전신화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나 현재 5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걸어다닐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몸짓이었으나, 이로 인해 김형찬군 자신과 그 가족은 너무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그것이 어떠한 자신의 죄도 아닌 공권력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것임에야 그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로 해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안기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모든 것이 비밀이다.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기부의 술한 사건조작과 국가정보의 악용, 인권유린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오지 않았는가?

김형찬 사건도 명백한 공권력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직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진상규명과 법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의 업무에 기밀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이지 업무 진행과정에 부정부패까지 기밀로 보호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직권남용과 국민의 인권유린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의 안기부의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재수사되어 국가기밀과 상관없는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행위는 백일하에 공개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안기부를 개혁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된다.

김형찬 사건도 국가기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며, 직권오남용에 의한 사건일 뿐이다. 따라서 김형찬을 불법연행한 4인 안기부 직원의 신분이 반드시 밝혀지고 직권오용과 인권유린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여야 하며 김형찬군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